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지도·점검 및 실시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행정안전부 ② 충청남도 등 [별표 1] 기재 40개 지방자치단체

조 치 기 관 ① 행정안전부 ② 충청남도 등 [별표 1] 기재 40개 지방자치단체

내 용

1. 업무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83조, 제140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등에 따라 매년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법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등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시달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거나 ②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의 이력, 사업현황, 과세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85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서면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집행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고, 지도·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상 선정기준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대상 법인이 서면조사서²¹⁾ 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직접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조사 후 그 결과를 신속히 해당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 세무조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선정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서울특별시 등 46개²²⁾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절차와 기준이 적정한지, 세무조사와 조사결과 통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서울특별시 등 46개 지방자치단체가 2018년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는지 점검한 결과, [별표 2] “지방자치단체별

21)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세무조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기 위해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

22) 서울특별시 본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강원도 본청, 춘천시, 경기도 본청, 구리시, 하남시, 군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이천시, 충청남도 본청, 천안시, 당진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본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울산광역시 본청,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본청, 구미시, 경산시, 대구광역시 본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라남도 본청, 전주시, 익산시, 광주광역시 본청,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서구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기준 현황(2018년)”과 같이 서울특별시 본청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으로 하여금 선정하도록 하거나 과세표준 금액 상위 법인 순, 부과체척기간 도래 법인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미리 정하여 그에 따라 선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35개 지방자치단체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하 시·군에서 조사의뢰하는 법인을 선정(강원도 본청)하거나 담당자가 부동산 취득금액, 추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부적정 사례】

- ▶ 충청남도는 관하 시·군에서 성실도 분석 결과 또는 무작위 표본추출 등을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임의 기준(부동산 취득액 10억 원 이상 등)에 의해 조사의뢰한 법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어 2013년 이후 세무조사를 받은 지 4년이 도과하지 않은 □□ 등 11개 법인을 정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2017년 2월)을 작성하면서 세무조사 대상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위 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총 913개에 이르자 세무조사 담당자는 부동산 취득액 순위 또는 감면세액 순위 등 임의로 7개²³⁾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55개 법인을 임의로 선정²⁴⁾

둘째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 등 46개 지방자치단체가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749개 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도 8,454개 법인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3,295개 법인

23) ① 4년 이상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②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③ 10억 원 이상 공동주택 신축, ④ 10억 원 이상 상가 등 신축, ⑤ 5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주택 감면,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법인 감면

24) 2014~2016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담당자가 임의로 선정

(28.0%)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별표 3] “지방자치단체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세무조사 미실시 현황(2014~2017년)”과 같이 22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총 32,744개 법인 중 8,430개 법인(25.7%)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법인과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이 각각 5,247개 및 3,091개(과태료 미부과)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법인 세무조사 실시 부적정 사례 】

- ▶ 세종특별자치시 ○실 법인 세무조사 담당 지방세무 A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한 130개 법인 중 세무조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98개 법인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서면조사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서면조사서를 제출한 63개 법인 중 61개 법인²⁵⁾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22개 법인에 대해 총 2,072,860,330원의 세금을 추징한 반면,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35개 법인 중 1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세금 107,987,770원을 추징하였으나, 나머지 34개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일(2018. 5. 17.)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없이 세무조사 미실시²⁶⁾²⁷⁾
- ▶ 천안시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한 481개 법인 중 세무조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396개 법인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서면조사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서면조사서를 제출한 341개 법인 중 281개(82.4%)²⁸⁾ 법인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180개 법인에 대해 총 5,324,118,980원의 세금을 추징한 반면,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55개 법인 중 5개 법인에 대해서만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총 489,397,010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나머지 50개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없이 세무조사 미실시

25) 2015년도 세무조사 대상이었으나 세무조사를 미실시한 ○○ 및 △△ 등 2개 법인은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였으나 시간부족으로 2016년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재선정하여 세무조사 실시

26) A는 2013. 7. 2.~2016. 7. 20. 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였는데(법인 세무조사 담당자: 1명), A가 담당하기 전인 2012년(법인 세무조사 담당자: 1명)의 경우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30개 법인 전체로부터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A가 조사업무를 떠난 후인 2016. 7. 21.부터 2017년(법인 세무조사 담당자: 2명)까지의 경우 역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각각 52개, 55개 법인 전체로부터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세무조사 실시

27) 2012년, 2016년 및 2017년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 담당자가 서면자료 제출을 구두(전화)로 적극 독촉하여 모든 세무조사 대상법인이 서면조사서를 제출한 반면, 2013~2015년의 경우 담당자(A)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적극 독촉하지 않음

28) 서면조사서를 제출한 법인 중 60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인력이 부족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셋째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 등 46개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제대로 통지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99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는 7,922개 법인(99.0%)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등 [별표 4] “지방자치단체별 정기 세무조사 결과 미통지 현황(2014~2017년)”과 같이 20개 지방자치단체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 총 21,956개 중 12,749개 법인(58.1%)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시·도로부터 분기나 반기별로 세무조사 실시 건수 및 추징 실적 등 세무조사 실적만 보고받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여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후 세무조사 실시 여부 및 조사 완료 후 결과통지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운영실태를 제대로 점검·과각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검토하겠으며,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도·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천안시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법인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 세무조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선정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충청남도지사 등 [별표 1] 기재 40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 법인이 서면조사서 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직접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부적정 명세

(단위: 개, %)

연번	기관명	세무조사대상 실제 선정기준	세무조사 선정 법인 수 (A)	세무조사미실시		세무조사서 미제출	세무조사 실시 법인 수 (C=A-B)	세무조사 결과 미통지	
				법인 수(B)	비율(B/A)			48	비율(D/C)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7,998	3	6.2
2	서울특별시 서초구	-	8,995	997	11.1	997	-	7,922	99.0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8,454	-	-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11,749	3,295	28	835	618	3,349	39.6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1,138	520	45.7	3	187	21	3.4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588	401	68.2	-	-	131	70.0
7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132	60	45.5	-	82	-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149	67	45	14	76	30	36.6
9	인천광역시 부평구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690	56	73.7
10	강원도 본청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450	281	40.7
11	춘천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480	30	6.3	29	467	146	32.4
12	남양주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723	256	35.4	127	-	179	38.3
13	파주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1,173	656	55.9	74	-	-	-
14	양주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448	180	40.1	120	184	-	-
15	포천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460	276	60	82	-	52	28.3
16	부천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1,923	328	17.1	328	-	-	-

연번	기관명	세무조사대상 실제 선정기준	세무조사 선정 법인 수 (A)	세무조사미 실시		세무조사서 미제출	세무조사 실시 법인 수 (C=A-B)	세무조사 결과 미통지	
				법인 수(B)	비율(B/A)			48	비율(D/C)
17	안양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934	169	18.1	169	-	-	-
18	시흥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580	67	11.6	11	182	-	-
19	해남시	-	292	110	37.7	11	-	4	2.2
20	이천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448	242	54	-	317	-	-
21	군포시	-	-	-	-	-	-	195	61.5
22	충청남도 본청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	-	-
23	천안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358	52	14.5	29	-	-	-
24	당진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148	-	-
25	세종특별자치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202	54	26.7	25	294	23	15.5
26	부산광역시 강서구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273	40	13.6
27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	81	29.7
28	울산광역시 남구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582	43	7.4	38	-	-	-
29	울산광역시 울주군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	-	-
30	경상북도 본청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	-	-
31	구미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	-	-
32	경산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	-	-
33	대구광역시 본청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757	-	-
34	대구광역시 달서구	-	-	-	-	-	422	21	2.8

연번	기관명	세무조사대상 실제 선정기준	세무조사 선정 법인 수 (A)	세무조사미실시		세무조사서 미제출	세무조사 실시 법인 수 (C=A-B)	세무조사 결과 미통지	
				법인 수(B)	비율(B/A)			48	비율(D/C)
35	대구광역시 수성구	-	450	28	6.2	28	-	162	38.4
36	전라북도 본청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	-	-
37	전주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800	585	73.1	157	126	-	-
38	익산시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140	14	10	14	-	42	33.3
39	광주광역시 본청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183	-	-
40	광주광역시 서구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	-	-	-	21,956	11	6.0
계		-	32,744	8,428	-	3,091		12,749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지방자치단체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기준 현황(2018년)

(단위: 개)

연번	기관명	세무조사계획상세무조사대상 및 선정기준	해당 법인수	선정 법인수	실제 선정기준 ¹⁾
1	서울특별시 본청	▶ 대상: 조세 및 규칙상 고액부동산 취득 및 감면 납세자 ▶ 선정기준: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에서 선정	365	35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대로 선정
2	서울특별시 강남구	▶ 대상: 고액부동산 취득 법인 중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선정기준: 없음	644	23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3	서울특별시 서초구	▶ 대상: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최근 5년간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법인 등 ▶ 선정기준: 비과세·감면 부동산 취득법인 전수조사	1,338	1,341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대로 선정
4	서울특별시 송파구	▶ 대상: 부동산을 100억 원 이상 취득한법인 ▶ 선정기준: 없음	238	23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대상: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자 등 ▶ 선정기준: 없음	7,897	421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6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상: 2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법인 ▶ 선정기준: 없음	657	381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대상: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세무조사 미 실시 법인 ▶ 선정기준: 없음	117	54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8	인천광역시 서구	▶ 대상: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 선정기준: 없음	274	35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9	인천광역시 연수구	▶ 대상: 최근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법인 ▶ 선정기준: 없음	142	18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 대상: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 신고 법인 중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인천광역시와 협의 후 선정 ▶ 선정기준: 없음	220	15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11	강원도 본청	▶ 대상: 최근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비과세·감면세액 1천만 원 이상인 법인, 조사물건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법인 등 ▶ 선정기준: 없음	1,312	174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사군 조사의뢰 법인)
12	충천시	▶ 대상: 부동산을 1억 원 이상 취득한법인 및 과점주주 미신고 법인 ▶ 선정기준: 없음	541	120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연번	기관명	세무조사계획상세무조사대상 및 선정기준	해당 법인수	선정 법인수	실제 선정기준 ¹⁾
13	경기도 본청	▶대상: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비과세감면 세액이 1억 원 이상 법인, 시군에서 조사 요청한 법인 등 ▶선정기준: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비과세감면 세액이 1억 원 이상 법인, 시군에서 조사 요청한 법인 등	4,125	65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대로 선정 ²⁾
14	남양주시	▶대상: 최근 3년간 부동산 등을 6억 원 이상 취득한법인 ▶선정기준: 없음	403	109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15	파주시	▶대상: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종업원 50인 초과 법인 ▶선정기준: 없음	1,822	264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16	양주시	▶대상: 3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법인 ▶선정기준: 없음	516	75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17	포천시	▶대상: 최근 3년간 취득가액이 6억 원 이상인 취득 법인 ▶선정기준: 없음	501	100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18	구리시	▶대상: 부동산 취득 신고금액 상위 법인 ▶선정기준: 부동산 취득 신고금액 상위 50개 법인	100	50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대로 선정
19	부천시	▶대상: 3억 원 이상 의 부동산을 취득한법인 ▶선정기준: 없음	2,659	420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20	안양시	▶대상: 최근 5년간 6억 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 및 종업원 50인 초과법인 ▶선정기준: 없음	458	226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21	시흥시	▶대상: 6억 원 이상 의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선정기준: 없음	1,472	150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22	하남시	▶대상: 최근 5년간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법인 ▶선정기준: 이월법인 및 취득연도순으로 선정	362	120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대로 선정
23	이천시	▶대상: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미 실시하거나 최근 5년간 5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법인 중 우수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제외 ▶선정기준: 없음	734	129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24	군포시	▶대상: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법인, 감면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후 관리 대상 법인,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 본점용 부동산 신축 법인 ▶선정기준: 최근 4년 이내 조사법인을 제외하고 취득연도 순 등으로 선정	258	98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대로 선정

연번	기관명	세무조사계획상세무조사대상 및 선정기준	해당 법인수	선정 법인수	실제 선정기준 ¹⁾
25	충청남도 본청	▶대상: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부과· 감면받은 법인 등 ▶선정기준: 없음	107	100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26	천안시	▶대상: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를 부과·감면받은 법인, 최근 4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등 ▶선정기준: 없음	2,287	80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27	당진시	▶대상: 1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선정기준: 없음	42	25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28	세종특별 자치시	▶대상: 2013~2014년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012~2013년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선정기준: 없음	241	55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29	부산광역시 본청	▶대상: 취득세 과세표준액 50억 이상의 물건을 취득·감면한 법인 등 ▶선정기준: 대상을 5구간으로 구분, 구간별 취득과표 상위업체 선정	220	220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대로 선정
3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상: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선정기준: 없음	216	78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31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상: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감면한 법인, 종업원 100인 이상 법인 중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등 ▶선정기준: 없음	119	101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32	울산광역시 본청	▶대상: 자본금 50억 원 또는 종업원 100인 이상인 법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법인,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및 신설법인 등 ▶선정기준: 부과제척기간 도래 법인 선정	249	65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대로 선정
33	울산광역시 남구	▶대상: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종업원 50인 초과 법인, 부동산 취득가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 ▶선정기준: 없음	605	100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34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상: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법인, 종업원 51인 이상인 법인 ▶선정기준: 없음	516	100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35	경상북도 본청	▶대상: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최근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최근 부과·감면세액 1천만 원 이상인 법인 등 ▶선정기준: 없음	183	100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36	구미시	▶대상: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부과·감면 1백만 원 이상인 법인, 종업원 50인 이상 법인,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선정기준: 없음	843	278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연번	기관명	세무조사계획상세무조사대상 및 선정기준	해당 법인수	선정 법인수	실제 선정기준 ¹⁾
37	경산시	▶ 대상: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과점주주 등 ▶ 선정기준: 없음	202	87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38	대구광역시 본청	▶ 대상: 3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 선정기준: 없음	206	60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39	대구광역시 달서구	▶ 대상: 신고내용 성실도 분석결과와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 미 실시 법인의 업종 규모 등 기준으로 선정 ▶ 선정기준: 취득금액 고액 순서 중 신축, 취득, 최근 4년 이상 미조사 순 선정	211	160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대로 선정
40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상: 최근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중 대구광역시 조사 법인 제외 ▶ 선정기준: 취득금액 고액 순서 중 신축, 취득, 최근 4년 이상 미조사 순 선정	192	100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대로 선정
41	전라북도 본청	▶ 대상: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 미 실시 법인,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신고내용의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 인정 기업 등 ▶ 선정기준: 없음	131	106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42	전주시	▶ 대상: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및 김면 법인 ▶ 선정기준: 없음	483	200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43	익산시	▶ 대상: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 미 실시 법인, 최근 1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비과세·감면세액 1백만 원 이상인 법인 ▶ 선정기준: 없음	122	35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44	광주광역시 본청	▶ 대상: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 미 실시 법인,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 50인 초과, 1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등 ▶ 선정기준: 없음	1,680	50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45	광주광역시 광산구	▶ 대상: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비과세·감면 1천만 원 이상인 법인 ▶ 선정기준: 각 항목 별 취득금액 순 선정	1,250	50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대로 선정
46	광주광역시 서구	▶ 대상: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 미 실시 법인,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비과세·감면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상인 법인 등 ▶ 선정기준: 없음	541	45	선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 선정

주: 1. 정기 세무조사 대상 모집 단에서 실제 세무조사 대상 표본집단을 추출하는 기준에 대해 분석

2. 경기도 본청은 시·군의 세무조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지방자치단체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세무조사 미 실시 현황(2014~2017년)

(단위 : 개, %)

연번	기관명	선정 법인 수 (A)	세무조사 미 실시		세무조사사전 미통지 법인 등	서면조사서 미제출법인
			법인 수(B)	비율(B/A)		
	계	32,744	8,430	25.7	5,247	3,091
1	서울특별시 서초구	8,995	997	11.1	-	997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1,749	3,295	28.0	2,460	835
3	서울특별시 종로구	1,138	520	45.7	517	3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588	401	68.2	401	-
5	인천광역시 서구	132	60	45.5	9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149	67	45.0	28	14
7	춘천시	480	30	6.3	1	29
8	남양주시	723	256	35.4	129	127
9	파주시	1,173	656	55.9	582	74
10	양주시	448	180	40.1	60	120
11	포천시	460	276	60.0	194	82
12	부천시	1,923	328	17.1	-	328
13	안양시	934	169	18.1	-	169
14	시흥시	580	67	11.6	56	11
15	하남시	292	110	37.7	99	11
16	이천시	448	242	54.0	242	-
17	천안시	358	52	14.5	9	29
18	세종특별자치시	202	54	26.7	27	25
19	울산광역시 남구	582	43	7.4	5	38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450	28	6.2	-	28
21	전주시	800	585	73.1	428	157
22	익산시	140	14	10.0	-	14

주: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휴·폐업, 법인소재 불명 등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 및 세무조사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세무조사 유예·면제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4]

지방자치단체별 정기 세무조사 결과 미통지 현황(2014~2017년)

(단위: 개, %)

연번	기관명	세무조사 실시 법인 수(A)	조사결과 통지 법인 수	조사결과 미통지 법인 수(B)	미통지 비율(B/A)
	계	21,956	9,207	12,749	58.1
1	서울특별시 서초구	7,998	76	7,922	99.0
2	서울특별시 강남구	48	45	3	6.2
3	서울특별시 종로구	618	597	21	3.4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454	5105	3,349	39.6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87	56	131	70.0
6	인천광역시 부평구	76	20	56	73.7
7	인천광역시 연수구	82	52	30	36.6
8	강원도 본청	690	409	281	40.7
9	춘천시	450	304	146	32.4
10	군포시	317	122	195	61.5
11	남양주시	467	288	179	38.3
12	포천시	184	132	52	28.3
13	하남시	182	178	4	2.2
14	세종특별자치시	148	125	23	15.5
15	부산광역시 강서구	294	254	40	13.6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273	192	81	29.7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422	260	162	38.4
18	대구광역시 달서구	757	736	21	2.8
19	익산시	126	84	42	33.3
20	광주광역시 서구	183	172	11	6.0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